해외정보

日本의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

1.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에 關한 國內外 情勢

1.1 海外의 情勢

1970年 後半, 歐美各國에서 品質管理 및 品質保證의 重要性·必要性에 대한 認識이 높아져 많은 나라에서 品質管理 및 品質保證에 關한 規格을 制定하였다. 그後, 國際的인 通商活動의 圓滑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規格을 統合하여 國際規格으로 制定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 1970년 ISO에서 동 規格을 調査審議하기 위한 技術委員會로서 TC176(品質管理 및 品質保證)을 設置하였다.

同TC에서는 從來의 品質管理 및 品質保證 規格인 英國 BS 5750 및 美國 ANSI/ASQC Z1－15를 基礎로 이 規格의 整合化를 도모하기 위한 회의를 開催하고 심의한 결과, 1987年 3月 品質시스템에 關한 첫번째 國際規格으로 ISO 9000시리즈를 制定·發行하게 되었다.

同 시리즈는 品質管理活動의 一般通則에서 供給者의 內部品質管理 實施를 基本要素로 하고 있는 ISO 9004, 購入者에게 信賴感을 주기위한 活動으로 外部品質保證에 關한 品質시스템 要求事項을 對象範圍別 3종류 모델로 분리하여 規定한 ISO 9001～9003, 그리고 ISO 9001～9004의 選擇 및 適用方法에 대하여 기술한 ISO 9000의 5規格으로 構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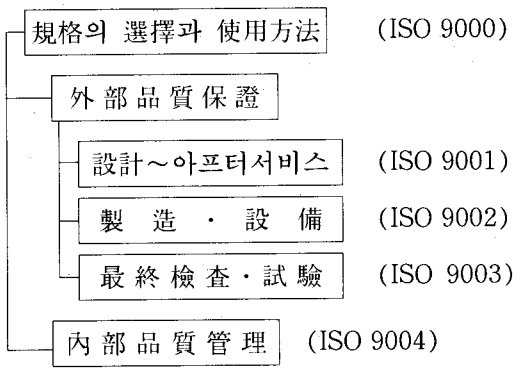

ISO 中央事務局의 調査에 따르면 ISO 9000 시리즈는 지금까지 50個國 以上에서 國家規格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同TC에서는 ISO 9000시리즈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시하여 各 産業分野에 ISO 9001～9003의 適用을 圓滑하게 하기 위한 規格을 作成하고 있다.

한편, 同시리즈에 따른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는 이미 30個國以上에서 適用되고 있으며, 앞으로 普及이 확산될 것으로 豫想된다.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는 自國의 産業과 製品등의 競爭力을 強化하는 觀點에서 1980年代 前半에 네덜란드와 英國에서 導入되었다. 1992年末 市場統合예정인 EC 各國에서는 市場統合에 따른 製品等의 圓滑한 流通등을 實現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各國의 實狀을 反映한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整備가 急速히 進行되고 있다. 일예로 英國에서는 이미 1萬數千개의 企業·工場等이 審査登錄을 하였고 最近에 制度가 確立된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數百個의 企業·工場등이 審査登錄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EC 各國間에는 相互承認作業이 活潑히 추진되고 있고, 또 北美, 濠洲, 아시아地域等에서도 이 制度의 導入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審査登錄機關의 認定制度를 포함한 품질시스템 審査登錄制度를 創設·運用하고 있는 主要한 國家는 다음과 같다(괄호 內는 認定機關의 略號 및 設立年度).

네델란드 (RvC 1981)
英 國 (NACCB, 1984)
프 랑 스 (AFAQ-CAA, 1988)
獨 逸 (TGA, 1990)
벨 기 에 (NAC-QS, 1991)
스 웨 덴 (SWEDAC, 1991)
美 國 (ANSI-RAB, 1991)
카 나 다 (SCC, 1991)
호주·뉴질랜드(JAS-ANZ, 1991)

이 制度는 그 보급이 확산되면 購入者와 供給者 간의 거래의 圓滑化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供給者에게는 自社의 品質시스템의 向上, 一般消費者에게는 製品의 品質確保에 따라 소비자를 保護하는 側面도 있으므로 美國 및 유럽의 一部를 國家에서는 이 制度가 企業間의 거래와 政府物資의 調達을 포함한 任意分野 뿐만 아니라, 法令에 규정된 強制分野에도 활용되고 있다. EC에서는 製品의 自由流通 및 消費者의 健康·安全을 確保하는 觀點에서 EC지침에 따른 製品認定制度(CE마크 制度)에 ISO 9000시리즈에 따른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를 일부 導入하고 있다.

1.2 日本의 狀況

日本의 企業·工場등이 世界에서 인정받고 있는 高水準의 品質시스템은 TQC活動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는 購入者의 要求事項도 反映하고 있으나 주로 供給者 주도로 이룩된 것이다. 한편 ISO 9000시리즈중 ISO 9001~9003은 購入者側의 要求事項을 規定한 것으로 이를 기저로 한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는 거래에 있어 第三者가 審査하는 것으로 日本의 企業·工場等이 從來에 채택하고 있는 品質시스템과는 쉽게 조화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이 制度에 대한 外國의 活潑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海外와 거래가

많은 産業을 中心으로 EC 諸國에서는 政府와 企業에서 物資를 調達할 때 ISO 9000시리즈를 기저로 한 品質시스템 審査登錄을 相當數의 企業에 要求하는 事態가 발생하고 있어, 日本에서도 海外의 登錄制度하에서 이미 複數의 審査登錄機關이 業務를 開始하여 지금까지 數十개의 企業·工場等이 審査登錄을 한 바 있다. 기타 많은 機關이 審査員을 養成하고 있는 등, 審査登錄業務를 開始하기 위한 準備를 하고 있으며 많은 企業·工場等이 審査登錄을 받기 위하여 社內體制를 整備하고 있다.

이러한 動向에 對應하여 1991年 10月 1日 ISO 9000시리즈의 飜譯規格으로서 JIS Z 9900~9904의 5規格을 制定하였다.

日本 産業界에서는 이 制度를 早期에 整備하여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制度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急速히 높아지고 있다. 또 이 制度의 活用이 自社의 品質시스템을 한단계 改善·向上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運營을 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의 影響은 全日本 産業界에 擴大될 것으로 豫想된다.

2.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基本的 槪念

2.1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性格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란 企業·工場等의 品質시스템에 대하여 ISO 9000시리즈(JIS Z 9900 시리즈)중 外部品質保證에 適用되는 ISO 9001~9003(JIS Z 9901~9903)의 3規格에 대한 適合性을 第三機關(審査登錄機關)이 審査하여 適合할 경우, 해당 企業·工場에 대하여 登錄·公表하는 것을 말하며, 審査登錄 機能 및 審査登錄 機關이 適切한 能力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는 機能과 審査員의 評價, 登錄 및 硏修등의 機能을 포함한 總合的인 제도이다. 審査登錄業務, 認定業務等은 申請에 의한 契約行爲에 따라 實施된다.

이 制度에 따른 品質시스템 審査登錄은 購入者가 供給者를 直接審査하는 대신에 第三機關인 審査登錄機關이 審査하여 登錄하는 것으로, 購入者는 登錄한 企業·工場等이 제시하는 審査登錄機關의 登錄證·마크等을 確認함으로서 供給者의 品質시스템의 效果的으로 機能하고 있다는 것을 信賴할 수 있게 된다. 이 制度의 本來의 目的은 購入者가 직접 品質을 確認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第三機關의 審査登錄結果에 따라 製品을 購入한 경우 品質에 대한 信賴感을 보다 증가 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 制度는 購入者의 立場 뿐만 아니라 供給者에게도 品質시스템 等에 대한 각 구입자의 이중 審査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自社의 品質시스템을 向上시키는 역할을 하며 企業·工場等을 PR하는 手段으로서 活用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制度는 民間經濟活動의 圓滑化를 促進하는 觀點에서 상거래와 계약의 편리성을 위하여 供給者와 購入者가 任意로 利用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 提供되는 것이지만 國際規格인 ISO 9000시리즈를 기저로한 制度이므로 그 結果는 國際的으로 通用된다.

더구나 이 制度는 보급이 확대되면 供給者 및 購入者에게 便利할 뿐 아니라 一般消費者에게는 製品等의 品質을 確保해 주므로써 消費者를 保護하는 새로운 側面이 있는 制度라고 말할 수 있다.

2.2 日本의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整備의 意義

요즘같이 다국적화 되고 국경이 없는 경제 狀況下에서 國際的 指針에 따라 評價된 製品은 교역에 있어 거래에 公評性·透明性을 높이고, 원활한 작용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므로 國際的인 經濟의 效率化 및 發展에 기여하게 된다.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世界的 움직임 및 확산은 지금까지 各國에서 個別的으로 實施하고 있던 購入者의 供給者에 대한 品質시스템等의 審査, 政府와 民間의 基準認證制度等을 可能한 整合化하고 效率的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國際的인 努力의 第一步로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品質管理 槪念을 日本企業·工場等의 品質시스템에 접목하는 것은 日本의 品質管理制度를 한층 더 改善·向上시키며 效率化를 창출하는 效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同時에 國際的으로 透明하고 公平하며 互換性이 있는 評價手法인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를 整備하여 活用하는 것은 日本市場의 開放性·透明性을 向上시키고 輸入의 圓滑化를 促進할 것으로 期待된다.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가 社會的으로 信賴를 받게 된다면 JIS마크制度뿐만 아니라 日本의 各種 基準認證制度에 그 結果가 活用되어 한층 더 효율적으로 活用될 것으로 期待된다.

그러므로 日本에서도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를 整備하고 健全하게 育成하여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것이 필요하다.

3.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認定方法

3.1 認定의 目的

JIS Z 9901~9903의 規定內容은 「供給者의 能力을 立證하는 것으로 購入者와 供給者間의 契約에서 必要한 경우 이용하는 品質시스템의 要求事項」이며 審査登錄機關의 認定行爲는 審査登錄結果를 보다 上位機關이 信賴性을 附與함으로써 이 制度의 本來目的인 購入者의 信賴感을 보다 增加시키는 것이다.

認定行爲는 供給者의 立場에서 品質에 대한 信賴度를 증가시키고 消費者를 保護하는 것으로, 현재 外國에서는 適用範圍가 점차 擴大되고 있다.

現在 日本의 審査登錄業務는 海外의 制度에 따라 實施되고 있으나 審査登錄機關의 認定制度가 아직 整備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各 審査登錄機關의 本制度에 따른 明確한 位置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購入者·供給者 뿐만 아니라 審査登錄機關도 이러한 狀

態가 계속되면 混亂을 招來할 것으로 指摘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의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를 健全하게 育成하기 위하여는 審査登錄機關을 인정하는 것이 必要하다.

앞으로 이 制度의 國際的인 發展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各國의 審査登錄結果를 相互承認하는 것이 重要하므로 이를 위하여 審査登錄機關에 대한 認定行爲가 必要不可缺하다.

3.2 認定機關整備의 必要性

審査登錄機關의 認定行爲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다 上位의 機關이 審査登錄機關의 審査登錄結果에 대하여 信賴性을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認定機關은 審査登錄機關으로부터 獨立되어 公平한 立場에서 認定을 위한 審査를 행할 수 있는 機關이어야 한다.

이 制度의 性格을 고려하면 日本에서의 認定主體는 民間이 主導하는 認定機關을 새로이 新設하여 民間의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통하여 民間의 創意, 能力, 資源이 충분히 活用될 수 있도록 하고, 制度의 受益者가 費用을 適正히 負擔함으로써 經濟合理性을 確保하도록 認定制度를 整備·運用하는 것이 適切하다.

또, 유럽과 美國에서도 대부분의 認定機關은 民間機關으로 되어 있으므로 國際整合·相互承認의 觀點에서 日本도 民間主導로 認定機關을 設置하는 것이 適當하다. 日本도 對外的 窓口를 一元化하는 觀點에서 認定機關은 1機關으로 하고 審査登錄機關의 認定은 海外의 機關에 대하여도 문호 개방하여야 한다.

新設되는 認定機關은 公平性·透明性이 要求되는 審査登錄機關等을 上位의 立場에서 認定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法的地位는 民法에 의거한 財團法人으로 하는 것이 適當하다.

이 制度가 널리 活用되어 發展하기 위하여는 認定機關은 높은 信賴性을 確保하는 것이 不可缺하며 嚴正한 認定의 確保, 機密의 維持等이 確實히 보장되는 體制로 하는 동시에 各界의 品質시스템에 關한 第一人者로 構成된 認定委員會(審査登錄機關等의 認定여부를 審議하는 委員會)等을 設置하는 등 認定機關으로서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必要하다.

또, 購入者 및 供給者의 불필요한 混亂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海外의 相互承認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相當한 實績을 쌓는것이 必要하므로 認定業務는 可能한 限 早期에 開始하는 것이 必要하다.

各國 制度의 狀況과 産業界의 수요 等을 고려하여 將來에 同機關이 品質시스템 審査登錄機關等의 認定뿐만 아니라, 製品認定機關, 試驗·檢査機關, 審査員 資格審査機關等, 各種機關의 能力認定을 客觀的으로 실시하는 民間認定機關으로서 發展할 것을 期待한다.

3.3 政府의 役割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는 民間의 상거

래와 契約等을 위한 任意制度이지만 一般消費者 使用製品等의 品質을 確保함으로써 消費者를 保護하고자 하는 政府의 시책에 부합하는 制度로서 확대되고 있으므로 政府는 健全한 育成·發展을 위하여 積極的으로 支援하는 것이 必要하다.

무엇보다도 認定機關이 認定行爲에 대하여 政府의 立場에서 충분한 信賴性을 附與하여 이 制度의 社會的·國際的信賴性을 確立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를 위하여 認定機關이 公益法人으로 設立許可되어 日本의 唯一한 認定機關으로서 位置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認定機關에 設置된 認定委員會等은 各界에서 이 分野의 第一人者로 構成되어야 하며 여기에 關係省廳에서도 參與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 制度가 政府의 物資調達과 基準認證制度에 活用되도록 하여 認定機關의 信賴性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GATT Standard Code 改正案의 精神에 입각하여 政府는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를 民間부분에서 整備·運用할 경우, 그 基準, 制度等은 日本獨自的인 것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國際的으로 認定받는 基準等에 따라야 하며 이 制度에 의한 認定 및 審査登錄의 結果는 海外의 制度와 相互 받아드릴 수 있도록 所要의 措置를 강구할 必要가 있다. 또, 日本의 優秀한 品質管理 經驗에서 얻은 지식이 ISO等 다른 기관에 제공되어 이 制度가 國際的으로 發展되도록 所要의 措置를 講究하는 것이 重要하다.

4.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運用方法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는 審査登錄機關이 企業·工場等을, 認定機關이 審査登錄機關等을 一定한 基準에 따라 審査하는 制度로서 審査登錄 또는 認定 業務를 實施하는 경우 申請者와 審査를 하는 機關과의 關係에 있어 公平性·透明性을 確保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 경우, 審査登錄과 認定의 結果는 이 制度의 利用者 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 충분히 評價되어 通用되어야 하므로 日本에서 이 制度를 整備할 때는 國際的整合性 確保를 基本理念으로 하여 必要한 基準等을 策定하여 運用하는 것이 重要하므로 具體的으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必要가 있다.

4.1 審査登錄의 實施

a. 審査登錄業務의 實施要領

審査登錄機關은 申請, 審査, 登錄證의 發行, 監督等, 全業務에 대한 實施要領을 정하여 公表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 實施要領은 國際的指針인 ISO/IEC Guide48(供給者의 品質시스템에 대한 第三者審査登錄에 關한 指針)을 基礎로 하는 것이 適當하다(別添 1에 實施要領의 例를 表示).

또, 審査登錄業務의 公平性·透明性을 確保하고 一定한 水準을 維持하기 위하여 JIS

Z 9901～9903 規格에 대한 解釋을 補完·整合化하는 것을 目的으로 作成된 「Guide-line」 및 審査登錄機關이 審査登錄業務를 實施하는 경우 一般的체크 項目을 表示하기 위하여 作成된 「체크리스트」는 必要에 따라 認定機關에서 承認하고 一般에 公表하는 것이 適當하다.

b. 適用規格

JIS Z 9001～9903의 3規格 중에서 申請者가 該當規格을 선정하는 것이 適當하다.

c. 審査登錄의 範圍

製品等을 生產·供給하는 場所 및 製品等의 特定한 品質시스템을 對象으로 하고 이를 申請·審査登錄의 範圍로 한다. 具體的으로 申請者는 필요에 따라 申請·審査登錄의 범위를 決定하고, 必要한 경우 審査登錄機關과 申請者가 충분히 協議하여 審査登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製品의 分類氣分은 輸出品目 Code (國際統一商品分類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略稱 HS Code)와 日本標準商品分類等을 活用하는 것이 適當하다.

4.2 審査登錄機關의 認定

a. 審査登錄機關의 認定基準

認定機關은 審査登錄機關을 認定하는 경우 審査登錄機關으로서 要件을 표시한 認定基準을 정하여 公表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 認定基準은 國際的指針인 ISO/IEC Guide40 (審査登錄機關의 容認에 關한 一般要求事項)을 基礎로 하는 것이 適當하다(別添2에 認定基準의 例를 표시).

審査登錄機關의 法的地位는 公的機關·公益法人, 營利法人等이 있지만 公平性·透明性 確保가 必要하므로 資本構成, 任員構成, 審査登錄以外의 業務內容等은 審査登錄業務를 公正하게 實施하는데 支障을 주지않아야 하며 충분한 技術的能力과 財政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審査員은 資格要件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審査業務를 圓滑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必要하다. 또, 審査業務의 一部를 外部機關에 委託하거나, 外部의 審査員을 活用하는 경우 適切한 管理規定을 만들어 管理하는 것이 必要하다.

海外의 審査登錄機關을 認定할 경우에도 國內와 同一한 認定基準을 適用하는 것이 必要하다.

b. 認定業務의 實施要領

認定機關은 審査登錄機關의 申請에 의거 上記의 認定基準에 일치여부를 審査하여 認定을 하여 이를 위하여 認定의 절차등을 규정한 認定實施要領을 作成하여 公表하는 것이 必要하다.

c. 認定의 範圍

品質시스템을 審査할 경우, JIS Z 9901～

9903이 全産業界에 기본 규격으로 사용되지만 審査登錄業務를 효율적으로 円滑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審査登錄機關이 對象分野에 대한 知識·經驗을 가지는 것이 重要하다.

認定機關에 의한 認定은 審査登錄과 같이 審査登錄機關의 申請에 따르며 認定을 할 경우에는 當該審査登錄機關의 業務實績等을 勘案하여 審査登錄業務를 수행할 區分을 明確히 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 認定범위의 區分은 海外와 相互承認을 추진하는 경우 重要한 要素가 되므로 外國의 動向을 충분히 考慮하여 設定하는 것이 適切하다.

또한, 審査登錄機關이 認定을 받은 경우 또는 認定된 審査登錄業務 以外의 獨自的인 事業으로 審査登錄業務를 실시하는 경우 認定을 받은 審査登錄業務와 混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審査員의 評價·登錄 및 研修

a. 審査員의 評價·登錄基準

審査員을 評價·登錄하는 機關은 審査員을 評價, 登錄하기 위한 基準을 정하여 公表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 評價·登錄基準은 國際規格인 ISO 10011－2(品質시스템 審査의 指針－審査員의 資格基準)을 基礎로 하는 것이 適當하다(別添3에 資格基準의 例를 表示).

b. 審査員評價·登錄

審査員에 대하여도 審査能力, 品質시스템에 關한 知識等을 嚴密히 評價하고 이를 維持·管理하기 위하여 審査를 實施할 수 있는 資格을 評價하여 登錄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를 위하여 審査員의 評價·登錄은 客觀的인 立場에서 嚴密히 실시할 必要가 있으며 또, 公平性·透明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審査登錄機關以外의 機關에서 評價·登錄業務를 實施하는 것이 適當하다.

日本에서는 이 制度의 合理的이고 效率敵인 運用을 위하여 審査員評價·登錄의 機能은 앞에서 설명한 認定機關에서 하는 것이 適當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審査員의 評價·登錄은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 뿐만 아니라 企業·工場等의 品質시스템을 自主的으로 內部監査하는 者의 資格으로서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審査員研修機關

日本에서는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를 圓滑하게 實施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資格基準을 갖춘 審査員을 충분히 確保하는 것이 重要하며 이를 위하여 審査員候補者에 대하여 品質시스템에 關한 知識·審査能力等을 所定의 水準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研修(教育訓鍊)을 실시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에서는 品質管理에 관한 研修를 실시할 수 있는 機關이 2개소 있으므로 審査員의 研修도 同機關에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研修內容·教課, 業務運營能力等, 그 水準을 確保하기 위하여 研修機關에 대하여

도 認定을 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硏修機關의 認定은 審査員의 育成·確保에 관한 業務를 圓滑하게 推進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審査員評價·登錄機能을 가진 認定機關에서 硏修機關의 認定機能을 가지는 것이 適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審査員硏修機關에서의 硏修는 審査員候補者뿐만 아니라 企業·工場等에서 品質管理活動에 從事하는者 等을 위하여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海外와 相互承認

ISO 9000시리즈는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서 國家規格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를 確立하고 있으므로 이 制度의 目的인 流通·거래의 圓滑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日本의 認定機關은 海外의 審査登錄機關도 認定對象으로 하여야 하며 相互承認을 推進하여 審査登錄結果가 國境을 초월하여 相互受容되도록 하는 것이 極히 重要하다.

相互承認의 차원은 審査登錄機關間의 相互承認과 認定機關間의 相互承認 2종류가 있으며 審査登錄機關間의 相互承認도 重要하지만 相互承認의 目的을 고려하면 認定機關間의 相互承認이 理想的이므로 이것을 推進하는 것이 重要하다.

相互承認을 實施할 경우에는 審査登錄(또는 認定)의 能力·實績等을 相互段階的으로 충분히 確認하는 것이 必要하다. 또한 當該相互承認의 內容은 이 制度의 利用者인 供給者와 購入者로부터 충분한 信賴를 얻는것이 必要不可缺하다.

또한, 認定機關間의 相互承認이 없는 段階에서 審査登錄機關間에 相互承認이 實現되는 경우, 認定機關의 立場에서는 當該相互承認은 審査登錄業務의 下位의 契約行爲이므로 認定機關은 認定行爲를 通하여 當該相互承認의 상대 審査登錄機關에 대한 審査能力을정확하게 把握하는 것이 必要하다.

또 現在 EAC(유럽 12個國에서 認定機關의 相互承認을 推進하기 위한 諒解覺書)를 全世界에 擴大하기 위한 連絡會議의 설치 必要性이 ISO 9000 Forum에서도 議論되고 있고, 相互承認의 개념도 ISO/CASCO(適合評價委員會)에서 檢討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日本은 認定機關이 中樞的役割을 수행함으로써 國際的인 동향에 따라 國際的인 相互承認개념을 構築하는等, 各國의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健全한 育成에 積極的으로 기여하는 것이 必要하다.

6.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活用

6.1 JIS마크 表示制度의 活用

JIS마크 表示制度는, 指定商品의 規格適合性等을 審査하여 商品에 JIS마크 表示를 許可하는 것으로 鑛工業品의 使用·消費者의 利益 및 公共이 利益을 推進함으로써 國民의 요구에 부응하는 制度이다. 한편, 品質시

스템 審査登錄制度는 供給者의 商品이 아닌 供給者가 保有하는 品質시스템의 妥當性을 第3者가 審査함으로써, 購入者와 供給者間 去來·契約의 便利性을 圖謀하는 것이며 當事者間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兩制度는 基本的으로 別個의 制度로 이해하는 것이 妥當하다.

그러나, 實質的인 審査內容을 檢討해 보면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에서 체크하는 事項은 JIS마크 表示制度에서 체크하는 項目과 部分的으로 一致하고 있다. 이에 따라 JIS마크 表示制度의 審査에 품질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結果를 活用하는 것이 效率的이고 合理的이다.

이를 위하여 審査登錄機關의 認定이 實施되는 等,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가 社會的으로 定着된 段階에서 JIS마크 表示制度에 의거 工場·事務所를 審査할 경우 그 一部를 書面으로 審査하는 等, 이 制度에 따른 審査結果를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것이 必要하다.

現在 JIS마크 表示制度는 GATT Standard Code 改正案의 精神에 따라 厚生省·通商産業省·運輸省의 3省共同告示로 「日本工業規格에 該當하는 것을 나타내는 表示의 許可 또는 承認에 관한 審査事項 및 審査基準」을 改正하여 工場을 審査할 경우 品質管理部分에 대하여는 JIS Z 9900시리즈에 따른 審査가 可能하도록 하는 作業이 進行되고 있다.

또 이와 並行하여 海外에서의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의 結果를 品質管理部分 審査時에 積極的으로 收容하는 것도 必要하다.

6.2 其他 基準認證制度에 活用

其他 基準承認制度에서 品質管理를 要求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基準認證制度의 運營에 責任이 있는 機關에서 이 制度에 따른 審査結果의 活用을 積極的으로 檢討해야 할 것이다.

또, 其他 基準認證制度에 있어서 品質시스템을 審査할 때, 그 內容 및 水準이 滿足한 境遇 그 結果를 品質시스템 審査登錄制度에 活用하는 것도 앞으로 關係機關에서 積極的으로 檢討해야 할 것이다. 전안